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별 전기요금 및 분산에너지사업자 전력거래의
요금 산정 시 고려요소 명시〉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40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9.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 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송전·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¹⁾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면서 요금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전력 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안 제43조제1항), 전기판매사업자가 지역별 전기요금²⁾을 정할 때에도 동일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에 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 촉진을 추가하고 근거 조문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연계 법률안이 신설하려는 같은 조 제6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5조)³⁾.

본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39)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연계 법률안임.

해당 연계 법률안은 「전기사업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가하고,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시·도지사의 신청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는 제5항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6항은 연계 법률안(의안번호 2219139)이 신설하려는 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⑥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거래)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이 조에서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u>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u>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거래) ① ----- ----- ----- ----- ----- ----- ----- ----- ----- ----- <u>.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전력 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요금과</u>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는 <u>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u>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 ----- <u>국가균형발전 및 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 촉진 등을</u> -----

현행	개정안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비용 및 거리, 전력 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우리나라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이 서로 다른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발전량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전력 자급률⁴⁾은 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경북(251.8%), 전남(215.0%), 충남(209.3%)은 소비량의 두 배를 상회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전(3.0%), 서울(6.8%), 광주(10.8%)는 소비량의 10% 안팎을 자체 생산하고 있음.

[2025년 시·도별 발전량·전력소비량 및 전력 자급률]

(단위: GWh, %)

구분	발전량	소비량	자급률	구분	발전량	소비량	자급률
대전	315	10,349	3.0	세종	4,899	4,299	114.0
서울	3,488	51,138	6.8	울산	34,207	30,099	113.6
광주	1,008	9,338	10.8	부산	27,086	22,100	122.6

4) 전력 자급률: 해당 지역의 발전량을 그 지역의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비율. 현행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통상 발전량 대비 소비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구분	발전량	소비량	자급률	구분	발전량	소비량	자급률
대구	3,945	16,726	23.6	경남	50,105	36,570	137.0
충북	6,737	26,913	25.0	인천	45,493	26,345	172.7
경기	85,963	145,316	59.2	강원	28,841	16,427	175.6
전북	15,500	21,725	71.3	충남	104,455	49,906	209.3
제주	4,576	6,230	73.5	전남	71,765	33,380	215.0
전국	595,526	549,418	108.4	경북	107,143	42,557	251.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자급률 산출

이와 같은 생산지와 소비지의 분리는 장거리 송전설비의 확충 필요성과 송전 과정의 손실을 수반하며, 발전설비 및 송전선로 입지를 둘러싼 지역 수용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2023년 이 법이 제정되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현행 제45조⁵⁾는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의 도입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한편 요금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이 법 시행령은 제8장⁶⁾에 “지역별 전기요금 등”을 두고 있으나 법 제45조에 따른 요금 산정에 관하여는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

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8장(지역별 전기요금 등)은 제44조(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제4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46조(기금의 투자 대상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에 관한 위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제2호7)는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을 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즉 지역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구분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현행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요금제와 관련한 전문가 연구용역이 2026년 8월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임.

개정안은 이와 같이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가 법률에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송전·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 지역별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요금 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역별 전기요금이 전기사용자의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산정의 기본적인 고려요소를 법률 수준에서 정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또한 이 법 제46조8)는 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발전

7)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확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발전시설·송전망 설치 불필요에 따른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에 기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게 할 수 있다.

시설·송전망 설치 불필요에 따른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 공급의 안정화 기여 등을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으로 규정하고 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요금 산정의 고려요소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과 하위 규범과의 역할 배분, 개정안이 제시한 지표의 정의 및 산정기준, 기존 요금체계 및 보편적 공급 원칙과의 관계, 적용 대상이 서로 다른 안 제43조와 제45조에 동일한 요소를 규정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요금 산정의 고려요소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과 시행령·고시 등과의 역할 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는 지역별 전기요금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력거래의 요금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법률에 직접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사항을 법률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 규범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검토 대상이 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이후에도 전력시장 및 계통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산정기준에 대한 조정과 보완이 필요할 수 있는데, 고려요소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 제도 보완을 위하여 입법

9) 하위 규범: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법령과, 행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함께 이르는 말.

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신속한 조정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요금이 원가주의 원칙¹⁰⁾에 따라 총괄원가를 반영하여 산정되는 것이 원칙인 점, 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 영향요인은 전문적·기술적 요소에 해당하는 점, 다른 공공 요금의 경우에도 요금 산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한 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자급률 등 정책지표를 요금 산정요소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보다는 고시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사업법」은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제1항에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인가 기준을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이 그 세부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¹¹⁾

10) 원가주의 원칙: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소요된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원칙. 현행 전기요금 산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됨.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울러 이 법 제13조는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에 관하여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의무설치량을 지역별·연도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이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고시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¹²⁾

즉 이 법 안에서도 법률·시행령·고시가 역할을 나누어 규율하는 구조가 이미 운영되고 있음.

한편 지역별 전기요금이 전기사용자의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그 기본적인 방향과 고려요소를 법률에 두어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실익도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요금 산정기준을 법률과 하위 규범 중 어디에 둘 것인지가 논의될 필요가 있음.

-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4. (생략)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 및 에너지사용량
 3.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적합성 정도
 4. 이 법 외의 법률에서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의무부과 여부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의무설치량: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의 관리자 등이 설치하여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의 설치량을 말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설치량을 정할 때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연도별로 의무설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율 방식을 참고하여, 법률에는 제도의 기본 방향과 고려요소의 대강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시행령이나 고시에 위임하는 방안 등 양자의 역할을 나누는 방식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음.

둘째, 개정안이 제시한 지표의 정의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안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는 요금 산정의 고려요소로 “전력 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¹³⁾”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이 법 제2조 및 「전기사업법」 제2조는 두 용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¹⁴⁾

특히 “분산에너지 사용률”은 분모를 무엇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지역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는 분산형전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13)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40MW 이하 전기사업용 발전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는 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발전량을 “분산형전원 발전량”으로 표기하고 있음.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는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분산에너지사업자, 송전망, 배전망,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등 10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2조는 전기사업, 전력시장, 보편적 공급, 분산형전원 등을 정의하고 있음. 두 조문 모두 “전력 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에 관한 정의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를 원용하여 2023년 기준 수치를 각각의 방식으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¹⁵⁾

[산정방식에 따른 지역별 분산형전원 비중 비교(2023년)]

(단위: %)

구분	대구	대전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강원	경기
총발전량 대비	100.0	100.0	90.0	70.3	70.0	32.2	17.2	21.5
전력수요량 대비	16.2	5.0	9.8	8.7	60.5	55.2	36.2	13.7

주1) 총발전량: 국내 사업용 및 자가용 설비의 발전량 총합(한전통계 내 집단에너지 및 신재생 발전량 보정)

주2) 전력수요량: 한전 전력판매량 + 자가전력소비량(구역전기 직판량 + 자가용설비 발전량)

주3) 분산형전원 발전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의 발전량으로서,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설비, 40MW 이하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가용 발전설비(설비용량 제한 없음)에서 생산한 전력을 말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대전의 경우 총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면 분산형전원의 비중이 100%에 이르나 전력수요량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16.2% 및 5.0%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 간 순위가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됨.

전력 자급률¹⁶⁾의 경우에도 어느 해를 기준으로 삼는지, 그리고 발전량과 소비량에 어떤 설비와 거래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¹⁷⁾

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40MW 이하 전기사업용 발전설비, 일반용전기 설비 중 발전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제2조제21호는 “분산형전원”을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16) 전력 자급률: 해당 지역의 발전량을 그 지역의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비율.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전기사업법」에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통상 발전량 대비 소비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17)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는 전력수요량을 한전 전력판매량과 자가전력소비량(구역전기 직판량 및 자가용설비 발전량)의 합으로 산정하고 있음. 즉 공장·건물이 자체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발전설비(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한 전력과, 특정 구역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가 판매한 전력을 어느 쪽에 넣을 것인지에 따라 자급률의 값이 달라질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 법 제46조제2항¹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¹⁹⁾는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산정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송전손실의 절감,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비용의 절감, 그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개정안이 요금 산정의 고려요소로 제시한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전력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이 반영하려는 내용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요금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각 지표의 개념과 산정방법·산정주체·기준시점 등을 법률이나 하위 규범에서 명확히 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기존 요금체계 및 보편적 공급 원칙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1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확대)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게 할 수 있다.
- 1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②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송전손실의 절감
 2.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비용의 절감
 3.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안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는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전력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요금 산정의 고려요소로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사업법」 제15조²⁰⁾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별도의 체계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²¹⁾는 그 인가기준으로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을 정하고 있음.

한편 전력 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하는 경우의 지역별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 기준 전력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는 서울·경기 외에 대전(3.0%), 광주(10.8%), 대구(23.6%), 충북(25.0%) 등 비수도권 지역도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지표를 반영할 경우 지역별·용도별 전기요금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한편 지역별 요금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20) 「전기사업법」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3. (생략)

지역에 따라 전력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는 주로 전력 도매 시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마다 가격을 달리 정하는 방식²²⁾으로 운영한 영국의 사례가 있음.

영국의 경우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가 2022년부터 전력시장 개편 검토²³⁾를 통하여 도매시장을 여러 개의 가격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025년 7월 전국에 하나의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방안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음.

그 사유로는 제도가 복잡해지는 점, 발전설비를 어디에 지을지 결정할 때 참고하는 가격 신호가 불확실해지는 점, 지역 간 부담의 배분에 관한 문제, 도입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점 등이 제시되었음.

다만 위 사례는 발전사업자와 전력 구매자 사이의 도매 거래가격을 정하는 구조에 관한 것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소매요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안과는 적용되는 거래 단계가 다르다는 점²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2) 도매 전력시장의 가격구역제: 하나로 운영되던 전력 도매시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마다 전력의 거래가격을 다르게 결정하는 방식. 구역과 구역 사이의 송전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그 제약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3) 영국 전력시장 개편 검토(REMA, Review of Electricity Market Arrangements): 영국 정부가 2022년부터 추진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 논의를 말함.

※ 출처: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의 2025. 7. 10. 발표자료.

24) 전력의 도매거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을 사들이는 자 사이의 거래를, 소매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각각 말함. 개정안은 이 중 소매요금에 관한 것임.

넷째, 안 제43조제1항과 제45조의 적용 대상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45조는 근거 조문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로 변경하고 있음.²⁵⁾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은 기본공급약관의 작성 및 인가에 관한 규정이며, 연계 법률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같은 조 제6항은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연계 법률안의 제16조제6항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따라”를 인용하고 있어, 두 법률안이 함께 의결될 경우 두 조문이 서로를 인용하는 구조가 형성되는데, 각 조문이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달리 정할 때 고려요소로 규정한 내용이 서로 달라지게 됨.

25)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는 제5항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6항은 연계 법률안(의안번호 2219139)이 신설하려는 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⑥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두 법률안 의결 시 조문 인용 및 고려요소 비교]

구분	「전기사업법」 제16조제6항(신설)	「분산에너지법」 제45조(개정)
인용 조문	「분산에너지법」 제45조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6항
요금 산정의 목적	(명시 없음)	국가균형발전 및 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 촉진 등
고려요소	송전·배전 비용 등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전력 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

따라서 기본공급약관의 작성 근거와 지역별 요금 산정의 근거를 구분하여 인용 관계를 정리하는 방안 및 두 법률에 규정되는 고려요소를 일치시키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본 법률안이 연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연계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본 법률안의 내용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도 심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